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06

발의연월일: 2020. 7. 30.

발 의 자: 장철민·황운하·이상직

양이원영 · 신정훈 · 조승래

박성준 • 전혜숙 • 윤재갑

강민정 · 이성만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 미납 시 공 공하수도 관리청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,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가 갖추 어지지 않은 실정임. 따라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73조제1항). 법률 제 호
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3조(강제징수 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·점용료 및 그 밖의부담금(이하 "사용료등"이라 한다)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「지방세징수법」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.

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등이나 가산금을 내야하는 자가 정하여 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등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)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제73조(강제징수) 공공하수도관리 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 정에 따른 사용료・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 개 정 안

제73조(강제징수 등) ① 공공하수 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・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(이하 "사용 료등"이라 한다)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정하여진 날까 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산금에 관 하여는 「지방세징수법」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.

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 등이나 가산금을 내야하는 자가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